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보육지원과-26436
등록일자	2016. 6. 13.
결재일자	2016. 6. 17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보육지원팀장	보육지원과장	★북지문화국장		
김상은	김서경	이명옥	전결 06/17 김효길		
협조자	위생과장 은승일				

## - 건강한 영유아의 바른먹거리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-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합동 점검 계획

- 점검기간** : 2016. 6. 15 ~ 6. 30(15일)
- 점검대상** : 총 24개소(구립 9개소, 민간 11개소, 직장 4개소)  
※ 관내 어린이집 237개소 중 10% 선정
- 점검반** : 3개조 편성(총 10명)
- 점검내용**
  - 안전관리 : 어린이집 시설, 화재예방, 통학차량 등 안전관리 점검
  - 급식위생 : 급식시설, 식자재 유통기한 등 위생관리 점검(위생과와 합동)
- 조치사항**
  -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 유도
  - 부실운영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
  - 지적사항 발생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로 사후관리 강화

# 강 남 구

(보 육 지 원 과)

## 【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영유아보육법 제33조(급식관리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(급식관리)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 들면서 위생에 취약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족구, 콜레라 등 감염성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사전 예방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관내 어린이집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 별 검토사항 [계속 : ] [신규 : ]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8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10%; 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들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주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 )</td> </tr> </table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)	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들	-----	( )	④ 미래행정 주요예측	-----	( )	⑤ 시장조사	-----	( 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들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주요예측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 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25개구 추진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문자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· 해당없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#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합동 점검 계획

영유아 보육아동의 위생과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.

☞ 근거 : 영유아보육법 제 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, 서울시 보육담당관-10119(2016. 6. 3)

## I 추진배경

- 본격적인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위생에 취약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수족구, 콜레라 등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사고 발생 사전 예방(위생과와 합동점검)
- 어린이집 시설, 화재예방, 통학차량 및 안전교육, 아동학대 예방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에 대한 집중 지도·점검 실시

## II 현 황

□ 어린이집 현황 〈2016. 6. 9기준, 단위 : 개소/명〉

유형	계	국공립	민간	가정	직장	부모협동
시설수	237	53	72	90	21	1
정 원	11,547	4,565	3,912	1,608	1,402	60
현 원	9,934	4,202	3,333	1,357	984	58
보육교직원	2,400	874	733	488	294	11

## III 추진계획

- 점검기간 : 2016. 6. 15 ~ 6. 30(15일)
- 점검대상 : 총 24개소(구립 9개소, 민간 11개소, 직장 4개소)  
※ 관내 어린이집 237개소 중 10% 선정

□ 점 검 반 : 3개조 편성(총 10명)

점검시설	담당직원
총괄	행정 7급 김상은
구립어린이집	사회 7급 장기주, 위생과 식품감시원 2명
민간어린이집	행정 8급 전유동, 위생과 식품감시원 2명
직장어린이집	행정 9급 함수연, 위생과 식품감시원 2명

□ 점검방법

- 「어린이집 급식위생 지도·점검표」 및 「어린이집 안전 지도·점검표」를 토대로 대상 어린이집에 대하여 급식위생 및 안전관리 실태 점검

□ 점검내용

- 안전관리 분야 : 어린이집 담당이 점검표(붙임2)에 의거 실태점검
  - 어린이집 시설, 화재예방, 통학차량 관리 등 어린이집 안전 전반의 점검
  - ※ 구립어린이집은 안전점검을 기 실시하여 안전분야 제외(보육지원과-24644, 2016. 6. 7)
- 급식위생 분야 : 어린이집 담당과 위생과에서 점검표(붙임2)에 의거 합동 점검
  - 하절기 식중독 및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관리, 급식시설 위생 관리, 유통기한 준수 등

□ 점검에 따른 결과조치

-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시 관련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위반 사항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또는 자발적 시정 유도
- 부실운영시설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
- 지적사항 발생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 관리로 사후관리 강화

## IV 행정사항

- 어린이집 급식위생 합동점검 협조요청 : 위생과
-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합동 점검 안내 : 담당자별 점검일정 사전 통보

- 붙임 : 1.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 지도 점검대상 명단  
2. 어린이집 급식위생점검표 및 어린이집 안전 지도 점검표, 끝.

※ 관련법령

**영유아보육법 제33조(급식관리)**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한다

**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(급식 관리)**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 나목과 같다

**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)**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

3. 안전·급식 및 위생관리, 나. 급식관리

**영유아보육법 제44조(시정 또는 변경명령)**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 원장 또는 그 설치·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4의7.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경우